

【 10 】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5. 12. 15

발 의 자 : 이항원 의원 외 2인

□ 제정이유

- 양주시의회 의원이 의결, 입법, 예산 및 결산심사, 감사, 조사 등의 각종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기술 및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조언, 권고, 자문을 받아 시정을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고 함.

□ 주요골자

- 위원회 및 위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양주시의회 의장단 및 의원의 자문에 응하여야 함(안 제2조)
-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안 제3조)
-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은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함(안 제4조)
- 시의회 의장 또는 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음(안 제7조)
- 의장은 위원의 해촉사유가 있을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(안 제8조)
-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위원장 보좌를 위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둠(안 제9조)
- 위원회에 참석 또는 자문에 응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(안 제10조)